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35
----------	-----

2020. 6. 24.(수)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 가. 발 의 자: 서동학 의원 등 7인
- 나. 발의일자: 2020년 5월 29일
- 다. 회부일자: 2020년 6월 1일
- 라. 상정일자: 2020년 6월 10일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서동학 의원)

가. 제안이유

- 충청북도 내 학교에서 시행하는 체험학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혜택을 증진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제명 변경에 관한 사항
 - (현행)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 (변경)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 체험학습에 자유학기의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을 추가(안 제2조)
- 교육감의 책무 신설(안 제3조)
- 체험학습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
- 지원방법 신설(안 제6조)
- 체험학습 안전교육 신설(안 제7조)
- 협력체계 구축 신설(안 제8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경분)

- 본 조례 개정안은 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는 체험학습의 종류를 확대하고 지원방법과 안전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 전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일일형 현장체험학습과 자유학기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을 비롯하여 교육감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였음
- 안 제5조에서는 체험학습비 지원대상자를 충북 도내 국·공·사립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정하고, 안 제6조에서는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교장이 체험학습 실시 전에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음

- 본 조례 개정안은 체험학습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체험 활동이 필요한 자유학기제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나아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 복지 혜택의 증진이 기대되는 타당한 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와 제4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다양한 교외체험학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본법」 제4조에 따른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 및 학부모의 교육비 경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체험학습”이란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와 제48조의2에 따라 실시하는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 숙박형 현장체험학습과 일일형 현장체험학습 및 자유학기의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외체험학습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험학습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학습비 지원)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학여행, 수련활동 등의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2. 일일형 현장체험학습

3. 자유학기 진로탐색을 위한 체험활동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외체험학습

제5조(지원대상자 등) 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1.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및 「국립학교 설치령」 제8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9조에 따라 충청북도 내에 설립된 학교
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학교

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의 구체적 범위 및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금은 교육감이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 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학교의 장은 체험학습 시행 전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체험학습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험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체험학습비 지원은 2021학년도부터 적용한다.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19. 6. 19.] [법률 제15950호, 2018. 12. 18., 일부개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9. 12. 3.] [법률 제16672호, 2019. 12. 3.,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0. 5. 1.] [대통령령 제30640호, 2020. 4. 28., 타법개정]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2005. 1. 29.>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방송프로그램을 수업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1. 1. 29., 2008. 2. 29., 2011. 3. 18.>

④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대상, 수업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3. 10. 30.>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①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체험학습 및 자유학기 지원항목 증가분 반영

2. 비용 발생 요인

-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및 일일형 현장체험학습 지원

3. 관련조문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 제48조의2

제48조(수업운영방법 등) ① 삭제

②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학년 또는 학과 등을 달리하는 학생을 병합하여 수업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⑤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교외체험학습을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48조의2(자유학기의 수업운영방법 등) ① 중학교 및 특수학교(중학교의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로 한정한다)의 장은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진로탐색 등 다양한 체험을 위한 체험활동을 운영해 한다.

<개정 2020. 2. 25.>

② 제1항에 따른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체험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9. 15.]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2020년 현장체험학습비 기준단가 적용

나.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체험학습 추계		연도별 체험학습 추계				
산출기초	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합계
1. 체험학습	4,723,992	4,723,992	4,818,470	4,914,837	5,013,134	19,470,433
가. 숙박형 체험학습(초, 중, 고, 특수학교) 18,418명	2,619,592	2,619,592	2,671,982	2,725,420	2,779,928	10,796,922
나. 일일형 체험학습(초, 중, 고, 특수학교) 18,418명	2,104,400	2,104,400	2,146,488	2,189,417	2,233,206	8,673,511

- ※ 2020년 이후 현장체험학습비 추계수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중위소득 66%) 학생수 증가분 2% 반영
- ※ 자유학기 진로탐색 체험활동은 자유학기 예산에서 체험학습 지원이 가능하여 별도로 추계 하지 않음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6. 작성자 : 교육국 학교자치과장 최경희